

서울특별시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안)

의안 번호	3558
----------	------

제안년월일 : 2026년 3월 6일
제안자 : 교통위원장

1. 대안의 제안경위

- 김원중 의원 외 28명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제3448호), 성흠제 의원 외 11명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제3492호)을 서울시의회 제334회 임시회 교통위원회 제3차 회의(2026.3.6.)에서 일괄 심사한 결과,

2건의 개정조례안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고, 2건의 개정조례안 내용을 통합·보완하여 서울특별시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안)」을 위원회 대안으로 제출하기로 함

2. 대안의 제안사유

- 김원중 의원 외 28명, 성흠제 의원 외 11명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각각 자전거 운전
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음주상태 외에 약물운전에 관한 사항을 시장과 시민의 책무에 추가하고, 자전거와 자동차 간 안전거리 확보 기준을 「도로교통법」에 맞게 정비하였으며, 사문화된 소상공인 간편결제 시

스텝 이용 감면 규정을 삭제하여 행정 용어를 순화하는 등 보완이 필요한 사항을 반영하였고, 설치된 자전거 시설 이용을 독려하고 자전거 주차시설의 설치기준, 위치 및 유지관리 근거를 조례에 명확히 규정하는 2건의 일부개정조례안을 통합·보완하여 위원회 대안으로 제출하고자 함

3. 대안의 주요골자

- 가. “정의는”을 “뜻은”으로 수정하여 용어 정의의 정확성을 높임(안 제2조).
- 나. 정의된 용어를 조례 내에서 약칭하여 사용하지 않도록 정비함(안 제2조, 제9조).
- 다. 조 제목을 간결하게 하여 조문 체계를 명확히 함(안 제3조 제목).
- 라. 여러 항이 나열되지 않는 조문의 제1항 번호를 삭제하여 조문의 간결성을 확보함(안 제3조의2).
- 마. 자전거 운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음주뿐 아니라 약물 영향도 포함하도록 문구를 보완함(안 제3조제4항, 제4조제5항).
- 바. 기존의 포괄적 표현을 도로교통법에 맞추어 “충돌을 피할 수 있는 필요한 거리를 확보하여 자동차를”로 명확히 규정함(안 제4조제4항).
- 사. 자전거전용도로 등 자전거이용시설이 설치된 경우 해당 시설을 이용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는 시민의 책무를 신설함(안 제4조제6항 신설)
- 아. 자전거 주차시설의 설치기준, 위치 선정, 규모 및 유지관리기준을 자

전거이용시설 정비지침에 포함하도록 명시함(안 제6조제4호 신설)

자. 유효기간이 지난 공공자전거 이용요금에 대한 소상공인 간편결제시스템 감면 조항을 삭제함(안 제12조의3제2항제7호 및 제3항)

차. “강구”를 “마련”으로, “의거하여”를 “따라” 등 알기 쉬운 표현으로 순화하여 변경함(안 제12조의2, 제15조, 제18조).

서울특별시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안)

서울특별시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정의는”을 “뜻은”으로 하고, 같은 조 제9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9. “자전거이용민간단체”란 자전거이용 환경개선과 자전거이용의 저변확대 등을 주요사업으로 하면서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4조 규정에 따라 서울특별시(이하 “시”라 한다)에 등록된 단체를 말한다.

제3조의 제목 “(서울특별시장 등의 책무)”를 “(시장 등의 책무)”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음주상태”를 “음주 및 약물의 영향으로 인하여 정상적으로 운전하지 못할 우려가 있는 상태”로 하며, 같은 조 제5항 중 “강구와”를 “마련과”로 한다.

제3조의2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3조의2(자전거도로의 설치) 시장과 구청장은 법 제12조에 따라 자전거도로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설계에 반영하여야 한다.

1. 재개발지역, 택지개발지역, 주거환경개선지역 등의 내·외부 도로에 대한

자전거도로 설치방안

2. 지하철, 학교, 공공기관, 쇼핑센터 등과의 연계방안
3. 도로를 신설하거나 확장할 경우 자전거도로 설치방안
4. 하천 및 공원 등 시민 여가·녹지 공간과 연계하여 경관과 이용 편의성을 함께 고려한 자전거도로 설치 방안
5. 교통약자를 포함한 보행자의 안전 확보를 위하여 동선 구분 및 분리 설계 방안

제4조제4항 중 “자동차를”을 “충돌을 피할 수 있는 필요한 거리를 확보하여 자동차를”로 하고, 같은 조 제5항 중 “음주상태”를 “음주 및 약물의 영향으로 인하여 정상적으로 운전하지 못할 우려가 있는 상태”로 하며, 같은 조에 제6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⑥ 자전거를 이용하는 시민은 자전거전용도로 등 자전거이용시설이 설치된 경우 해당 시설을 이용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6조제4호를 제5호로 하고, 같은 조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자전거 주차시설의 설치 기준, 위치 선정, 규모 및 유지관리기준

제9조제1항 단서 중 “민간단체”를 “자전거이용민간단체(이하 “민간단체”라 한다)”로 한다.

제12조의2제7항 중 “강구”를 “마련”으로 한다.

제12조의3제2항제7호를 삭제하고, 같은 조 제3항 단서를 삭제한다.

제15조제1항 중 “강구”를 “마련”으로 한다.

제18조제1항 중 “의거하여”를 “따라”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교통위원회 대안
<p>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u>정의</u>는 다음과 같다.</p> <p>1. ~ 8. (생략)</p> <p>9. “자전거이용민간단체”(이하 “민간단체”라 한다)란 자전거 이용 환경개선과 자전거이용의 저변확대 등을 주요사업으로 하면서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4조 규정에 따라 서울특별시(이하 “시”라 한다)에 등록된 단체를 말한다.</p> <p>10. · 11. (생략)</p> <p>제3조(서울특별시장 등의 책무) ① ~ ③ (생략)</p> <p>④ 시장은 자전거운전자가 음주상태에서 자전거를 운행하지 않도록 적극적인 홍보·교육·캠페인 등을 실시하여야 한다.</p> <p>⑤ 자치구청장은 자전거이용시설의 정비 및 자전거이용자의 안전과 편리를 도모하기 위한 시책 강구와 함께 자전거도로대장의 작</p>	<p>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u>뜻</u>은 다음과 같다.</p> <p>1. ~ 8. (현행과 같음)</p> <p>9. “자전거이용민간단체”란 자전거 이용 환경개선과 자전거이용의 저변확대 등을 주요사업으로 하면서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4조 규정에 따라 서울특별시(이하 “시”라 한다)에 등록된 단체를 말한다.</p> <p>10. · 11. (현행과 같음)</p> <p>제3조(시장 등의 책무) ① ~ ③ (현행과 같음)</p> <p>④ ----- 음주 및 약물의 영향으로 인하여 정상적으로 운전하지 못할 우려가 있는 상태-----.</p> <p>⑤ ----- ----- ----- <u>마련과</u> ----- -----</p>

수립·시행)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자전거이용시설의 정비지침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1. ~ 3. (생략)

<신설>

4. (생략)

제9조(자전거 주차요금) ① 법 제1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된 자전거주차장의 주차요금은 무료로 한다. 다만, 자전거주차장의 관리·운영을 민간단체 등에 위탁하는 등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주차요금을 별표의 범위 내에서 규칙으로 정하여 부과할 수 있다.

② (생략)

제12조의2(공공자전거 및 공공자전거대요소등의 설치·운영) ① ~ ⑥ (생략)

⑦ 시장은 공공자전거 주차구역의 질서 유지를 위하여, 민간 공유자전거, 개인형 이동장치 및 일반자전거 등이 해당 구역에 무단으로

수립·시행) -----

-----.

1. ~ 3. (현행과 같음)

4. 자전거 주차시설의 설치 기준, 위치 선정, 규모 및 유지관리기준

5. (현행 제4호와 같음)

제9조(자전거 주차요금) ① -----

-----자전거이용민간단체
(이하 “민간단체”라 한다)-----

-----.

② (현행과 같음)

제12조의2(공공자전거 및 공공자전거대요소등의 설치·운영) ① ~ ⑥ (현행과 같음)

⑦ -----

주차되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⑧ · ⑨ (생략)

제12조의3(공공자전거 이용요금의 감면 등) ① (생략)

② 제1항에 따른 감면 대상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다.

1. ~ 6. (생략)

7. 소상공인 간편결제시스템(소상공인의 결제 수수료 부담을 줄이고자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지정한 운영기관이 운영하는 결제시스템을 말한다)으로 이용요금을 결제하는 사람. 다만, 다른 감면사유와 중복되는 경우 감면율이 높은 하나만 적용한다.

8. · 9. (생략)

③ 제2항에 따른 감면 대상자별 감면율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다만 제2항7호에 따른 감면율은 100분의 50범위에서 한다.

제15조(자전거이용자에 대한 지원)

① 시장은 자전거이용활성화를 위

마련 -----.

⑧ · ⑨ (현행과 같음)

제12조의3(공공자전거 이용요금의 감면 등) ① (현행과 같음)

② -----
-----.

1. ~ 6. (현행과 같음)

<삭제>

8. · 9. (현행과 같음)

③ -----

----- <단서 삭제>

제15조(자전거이용자에 대한 지원)

① -----

해 자전거이용자에 대한 지원시책을 적극 강구하여야 한다.

② ~ ④ (생략)

제18조(권한의 위임·위탁) ① 시장은 법령 또는 조례의 규정에 의거하여 설치한 자전거 주차장·보관소·수리센터·대여소 및 자전거교통안전 체험교육장의 관리를 동시설이 설치되어 있는 지역의 구청장에게 위임하거나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참여하는 민간단체 등에게 위탁할 수 있다.

② (생략)

-----마련-----.

② ~ ④ (현행과 같음)

제18조(권한의 위임·위탁) ① -----
-----따
라-----

-----.

② (현행과 같음)